

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2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5년 사업 개편방향

□ 2025년 사업 개편방향

구분	2024년	2025년		
지원대상	소상공인협동조합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확대)		
지원유형	일반형 (성장, 도약단계)	상권형	골목경영패키지 동네상권발전소 등 후속사업화	소형상권의 조직화, 컨설팅 등 지원 상권 내 환경개선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등 협업(S/W) 사업 지원
		산업형	소공인 간 협업체 및 대·중소기업+소상공인 간 협업에 필요한 신제품개발, 유통채널 발굴 등 지원	
		조합형	공동장비, 브랜드, 마케팅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지원규모	80개 협동조합 내외	상권형	골목경영패키지 10개 · 동네상권발전소 후속사업화 5개 내외	
		산업형	소공인 간 및 대·중소기업+소상공인 협업 컨소시엄 5개 내외	
		조합형	협동조합 60개 내외	
지원한도	성장단계 1억원, 도약단계 3억원	상권형	골목경영패키지(0.5억원 한도), 동네상권발전소 후속 사업화(5억원 한도)	
		산업형	2억원 한도	
		조합형	성장단계(0.5억원 한도), 도약단계(1억원 한도) * 국비보조율 70~80% 이하	

□ 2025년 공고(* 유형별 중복신청 불가)

① 조합형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 매출액 기준, 지원규모 상이

지원대상 및 모집대상 :
소상공인협동조합 60개사 내외

② 상권형 및 산업형 신규

소상공인 협업체 구성·조직화로 협업을
도모, 지역상권 내 핵심 경제주체로 육성
및 대기업 등 민간역량을 활용한
동·이업종 간 협업, 수출 등을 지원

지원대상 : 협업체* 20개사 내외
모집대상 : 전문기관 2곳(유형별 1곳)

*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구성체

** 상권형 및 산업형의 경우, 협업체 모집은 전문기관에서 별도 공고 예정

1

사업개요 및 신청방법

□ 사업목적

-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고 성장단계별 공동장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협동조합(조합원)의 경쟁력 제고
- 지역상권 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위한 조직화, 마케팅 등 추진 및 대기업 등 민간역량을 활용한 동·이업종 간 협업, 수출 등을 지원*

* 5인 이상의 소상공인(50% 이상) 협업체로 구성하여 희망사업 자율 추진

□ 유형별 개요

구분	① 조합형	② 상권형 신규	③ 산업형 신규
사업 목적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고 성장단계별 공동장비 지원 등으로 협동조합(조합원)의 경쟁력 제고	지역상권 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위한 조직화, 마케팅 등 추진	대기업 등 민간역량 활용 동·이업종 간 협업, 수출 등 지원
지원 내용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소상공인 협업체 구성 초기 단계부터 지역상권 내 핵심 경제주체로 육성	업종 간 협업을 통한 신제품 개발, 생산·제품개발·마케팅 등 공동사업 지원
선정 규모	60개 내외, 1개 조합 당 최대 1억원 이하(국비 70~80% 이하 + 자부담 20~30% 이상)	전문기관 1곳, 25억원 * 협업체 15개 내외 지원금액 22.5억원 포함	전문기관 1곳, 10억원 * 협업체 5개 내외 지원금액 9억원 포함
선정 대상	소상공인 협동조합	유통, 지역상권, 컨설팅, 협업 등 관련 분야 운영·관리 역량 보유 기관	업종 간 협업, 판로개척, 수출지원 등 관련 분야 운영·관리 역량 보유 기관
비고	협동조합(협업체) 대표 또는 구성원이 백년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에 해당할 경우 가점 부여 등 우대지원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진행가능, 수혜자(협업체*) 모집·평가, 예산교부, 지원사업 운영 등 전담 * 협업체 대표 또는 구성원이 백년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에 해당할 경우 가점 부여 등 우대지원	
공고 안내	4~9페이지	10~17페이지	18~25페이지
신청 서식	붙임 1	붙임 2	붙임 2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① (조합형) 온라인 신청(<http://coop.sbiz.or.kr>, 협업활성화 시스템)

○ (공고기간) '25. 2. 4.(화) ~ 3. 31.(월), 16:00까지

○ (신청기간) '25. 2. 11.(화) ~ 3. 31.(월), 16:00까지

* 16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이의신청 불가)

② (상권형·산업형) 온라인 신청(www.sbiz24.kr, 소상공인24)

○ (공고기간) '25. 2. 4.(화) ~ 3. 4.(화), 16:00까지

○ (신청기간) '25. 2. 11.(화) ~ 3. 4.(화), 16:00까지

* 총괄 PM 담당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 수행 전문기관이 추가과업 수행사의 제출서류 함께 제출(경로 : 소상공인24 - 공고조회 - 지원신청)

□ 문의처

문의처	전화번호	e-mai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7926,7928	coop@semas.or.kr

① 조합형

* 협동조합 60개사 내외, 최대 1억원 이하 지원

가.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 간 협업 및 이익창출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조합원) 등의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5. 11. 30

□ 선정규모 : 협동조합 60개사 내외

나.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3)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 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신청요건

-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면서 조합원의 50%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 매출액 및 매출증가율 기준으로 단계별 신청

< 신청구분 및 요건 >

구 분	필수 요건
(공통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최소 5인 이상) * "[참고3]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 공동장비 신청 조합은 IoT 지능형 단말기 부착필수 * 조합부담금 장비 1대당 10만원 내외

구 분	단계별 요건(1개 해당)
성장단계 (①, ②번 中 택1)	①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1천만원 이상~5억원 미만 ② 조합의 '23년 대비 '24년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20% 미만 * 전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불가하나, '24년 이후 설립 조합은 신청 가능
도약단계 (①, ②번 中 택1)	①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② 조합의 '23년 대비 '24년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 * 전국단위 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경우 '성장단계' 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
지역기반형 (①, ②번 2개 모두 해당)	① 성장 단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 중 ② 지역 가치를 실현하고 상권의 주체로서 상권 문제 해결하는 지역 협동조합 또는 자율상권조합*(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조직된 협동조합) * 지역상권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공통조건 미충족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원 참여 시에도 신청가능 ** 지역기반형 유형의 경우 지원항목 중 상권활성화 활동을 필수 편성 *** 상권활성화 활동은 협동조합 소재지 또는 조합원 사업장 소재지(조합원 50%이 이상이 소속된 소재지)의 활동으로 한정함(광역자치단체 기준)

우대사항(최대 10점)

구 분	우대사항 세부내용
청년(2점)	이사장이 청년이거나 또는 전체 조합원 중 청년이 50% 이상인 경우 * 청년 : 공고일('25.2.4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5.2.5일 이후 출생자)
여성(2점)	이사장이 여성이거나 또는 조합원 중 여성기업(확인서)이 있는 경우
장애인(2점)	이사장이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이거나 조합원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경우
BM경진대회(2점)	'23~'24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BM경진대회 수상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백년소상공인(5점)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1인 이상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스마트제조(5점)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1인 이상이 스마트제조지원(舊 스마트공방) 이력이 있는 경우
기업가형 소상공인(우선선정)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구성원이 중기부(공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업 중 아래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라.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분야 : 성장단계, 도약단계, 지역기반형

구 분	지원한도(분야별 정부보조 비율)	선정 규모(안)*
성장단계 지원	최대 5천만원(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이내)	60개 내외
도약단계 지원	최대 1억원(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이내)	
지역기반형 지원	최대 1억원(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이내)	

* 최종 지원금액과 선정 규모는 선정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지원분야	세부내용	
공동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차량지원 제외) ** 협동조합(협업체) 명의면서 정부지원에 적합 장소에 설치 	
공동일반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비즈니스 모델(BM) 등 각종 기법개발
	브랜드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브랜드 전문기관에서 선정예정
	마케팅 ¹⁾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규모화사업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협동조합 자체사업
	프랜차이즈 ²⁾ 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참고1]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상권활성화 ^{3,4)}	• 지역상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등 상권활성화 활동

- 1) 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경우 '25년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2)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 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 3) 상권활성화 분야의 경우, '지역기반형 지원' 사업에 한함
- 4) 상권활성화 활동은 협동조합 소재지 또는 조합원 사업장 소재지(조합원 50% 이상이 소속된 소재지) 내에서의 활동으로 한정함(광역자치단체 기준)

마.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5. 2. 4.(화), ~ 3. 31.(월), 16:00까지

□ 신청기간 : **'25. 2. 11.(화), ~ 3. 31.(월), 16:00까지**

* 16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이의신청 불가)

□ 신청방법 : 협업활성화 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coop.sbiz.or.kr>)

-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 참조[별도 안내]
- ② '협업활성화(http://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 사업신청 시, 조합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신청(조합 정보, 사업비 신청내역 등)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발급처 등)는 [참고5, 참고6] 참조
- ③ 신청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이 조건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바.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총 2~3단계의 점검 및 평가·심의를 통하여 선정

○ (공동일반)

① 서류 검토	▶	② 선정심의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발표 및 질의 응답, 선정 및 최종 사업비 결정

○ (공동장비)

① 서류 검토	▶	② 현장검증	▶	③ 선정심의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외부전문가 적합여부 평가		발표 및 질의 응답, 선정 및 최종 사업비 결정

□ 평가방법

- ① (서류검토) 사업계획, 증빙 등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여부 등 검토
 - 조합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

< 서류검토 후 처리방법 >

구분	처리조건	후속조치
접수	-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	- 현장평가 등 향후 추진 일정 안내
보완	-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마감기한이 임박하여 보완을 목적으로 기 제출한 서류 등을 재제출하는 경우 즉각 반려 처리 될 수 있음	- 보완사항 안내 * 보완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미 보완시 탈락. 단, 부득이한 경우 보완기한(3일 이내)을 연장할 수 있음
반려	-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반려(탈락)사항 안내

- ② (현장검증) 공동장비 신청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현장(적합여부) 평가
 - * 공동장비 설치 장소, 공동장비 필요성 등 평가 후 '적합'인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진행
- ③ (선정심의)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고
 - 대면(발표) 및 질의 응답 진행
 - (심의내용) BM, 조합역량, 사업지속성, 협동조합의 가치확립 등 평가, 지원 조합 선정 및 지원 금액 확정 등 최종 심의
- ④ (결과통보)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확인 및 조합으로 개별 통보

사. 참여제한 등 유의사항

□ 참여 제한 : 아래에 해당될 경우 사업신청 불가

- ① 협동조합 및 이사장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② 휴·폐업중인 협동조합
- ③ 조합원의 50% 이상이 휴·폐업중인 협동조합
- ④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협동조합
- ⑤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⑥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2)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조합원
 - * 하나의 조합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
- ⑦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 ⑧ '20년 이후(20년 포함)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5회 지원받은 협동조합

□ **유의사항** : 사업 신청 협동조합은 아래 내용에 유의 필요

- ①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지원금 환수) 될 수 있음
- ②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 실제수행내용 등에 따라 승인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③ 본 사업 참여 시 협동조합과 조합원과의 내부거래(재화, 서비스 등 구입) 불가
- ④ 사업 선정 시, 선정 협동조합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협동조합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음
- 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협동조합에 책임이 있음
- ⑥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13.8.6, 시행'14.8.7)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조합원 전원의 회원가입이 필요

□ **의무사항** : 사업 선정된 협동조합은 아래 사항의 이행 필요

- ① 사업비 집행 시 「국가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필수 이용해야하며, 미 사용 시 사업추진 불가
- ② 선정 통보된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 내 사업 담당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함
- ③ 선정 조합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가입 후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증권 미제출 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증권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음(예치금은 해당회사의 자체 방침으로 공단 방침과는 무관)
- ④ **총 사업비*의 20%(장비 30%) 이상 "자부담금"과 사업진행 시 소요되는 "총 VAT(10%)" 및 "IOT 장비(지원 장비 1대 당 10만원 내외)"는 협동조합 부담**
* 지원조합은 지원조합 명의의 사업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 입금 후 협약 체결, 자부담금 미입금 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⑤ **공단의 요청자료* 제공 및 전산시스템에 정보입력을 해야 하며, 미이행 시 협약사항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공단에서 요청하는 조합현황 정보, 2)재무정보 등 현황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연1회)
- ⑥ **'25년도에 지원받은 조합은 차년도 실시되는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조사에 응하여야함**
* 불응 시 공동일반 사업참여제한(최대 3년), 공동일반(5년간 조사) 사업참여제한(최대 5년)

가.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상권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 간 협업 모델실행의 전문적 지원으로 성과창출
- 지역 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협력하여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5. 12월

* 추후 운영 일정에 따라 사업 기간 및 협약완료일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규모 : 1개 전문기관

* 단독(사업수행 전문기관) 또는 컨소시엄(선택)으로 진행 가능,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수행 전문기관(1개 기관) + 추가 과업 전문기관(1개 기관) 신청 가능

□ 지원예산 : 25억원 내외(협업체 지원금액 22.5억원, 운영비 2.5억원)

□ 지원내용

- (골목경영패키지)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점포수 50개 미만 소형상권 대상 조직화, 교육·컨설팅, 공동마케팅, 온라인 판로 등 지원
- (지원규모 및 사업예산) 소형상권 10개, 총 5억원(지원금액 4.5억원 포함)
- (동네상권발전소 등 후속사업화) 상권기획자, 대학,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5인 이상 소상공인 협업체(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의 상권활성화 활동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 (지원규모 및 사업예산) 협업체 5개, 총 20억원(지원금액 18억원 포함)

□ 주요역할

1 수혜 협업체 발굴

- (발굴) 협업화, 조직화 등에 잠재력을 가진 소형상권 및 협업체를 사업 유형별(①골목경영패키지, ②동네상권발전소 후속사업화)로 발굴
- 전문기관 보유 채널(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 게재 후 모집 必

<(참고) 유형별 모집대상>

① **골목경영패키지** : 점포수 50개 미만(소상공인 50% 이상 구성)의 골목형상점가 등 조직화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소형상권(10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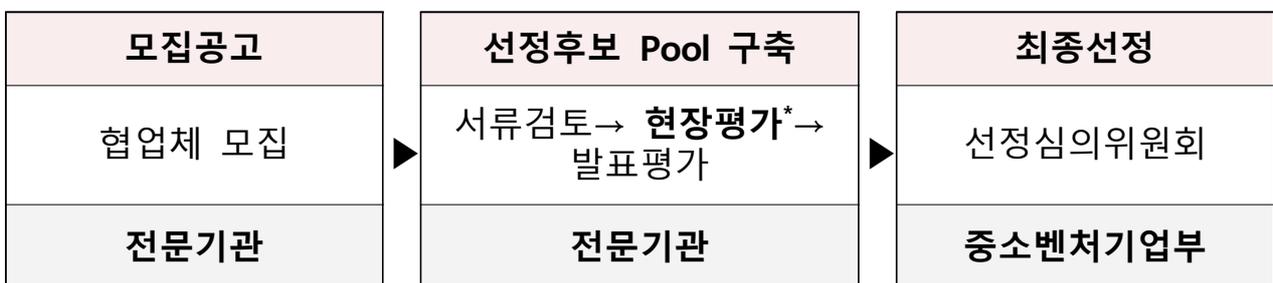
② **후속사업화** :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협업체 컨소시엄(5곳)

* 동네상권발전소 추진 이력이 있는 주관기관, 자율상권조합 준비위원회(상인 등)로 구성 가능

2 수혜 협업체 후보 Pool 구축 및 선정심의 운영

- (후보 Pool 구축) 유형별로 2·3단계로 평가, 지원규모의 1.5배수로 수혜 협업체 후보 Pool 구축(골목경영패키지 15곳, 후속사업화 8곳)
- (골목경영패키지) 2단계 평가(서류→발표) 후, 후보 선정(고득점순)
- (후속사업화) 3단계 평가(서류→현장→발표) 후, 후보 선정(고득점순)
- (선정심의 운영) 수혜 협업체 선정심의위*(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운영
- *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유형별 후보군을 평가, 최종 지원대상 선정

< 공동사업(상권형) 지원대상 모집 및 선정절차 >



* 골목경영패키지 유형은 현장평가 제외

③ 최종선정 협업체 대상 지원(세부과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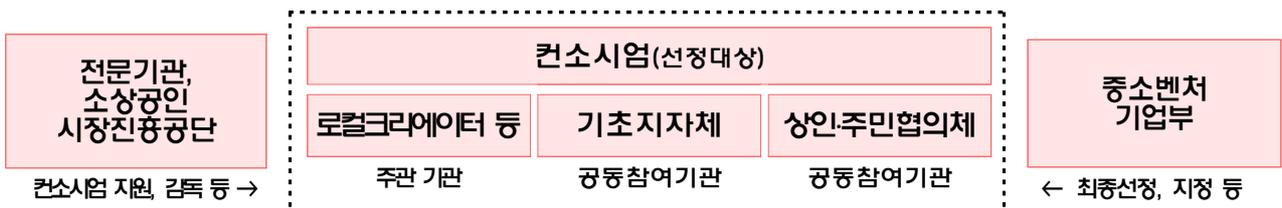
① 골목경영패키지(10곳, 1곳당 최대 5천만원, 자부담 10%)

- (조직화 컨설팅) 상인회 등 조직이 부재한 소형상권 특성을 고려, 상권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인 조직화 지원
 - (컨설턴트 매칭) 전문기관 보유 컨설턴트 pool 활용하여 매칭
 - * '선택제(협업체가 컨설턴트를 선택)'와 '추천제(전문기관 추천)' 방식 병행
 - (성과점검) 협업체(소형상권)별 컨설팅 결과 및 과제 이행여부 등 점검
 - (조직화) 상인회 구성,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정책대상으로 자격화 지원
 - *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 (교육·멘토링) 소형상권 내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제고, 결속력 강화 등을 위한 교육, 네트워킹, 개별 점포 상권분석 등 멘토링 지원
- (홍보·마케팅)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 모객 이벤트, 제품·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상권에 맞는 판로 다변화 방안 코칭 등

② 동네상권발전소 후속사업화(5곳, 1곳당 최대 5억원, 자부담 20%)

- (Pre상권활성화 지원) 상권별 특화요소(역사, 문화, 지역자원 등)를 반영하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완료한 골목상권(권소사업)을 대상으로,
 - 예술거리 등 특화거리 조성, 상권 내 간판, 점포 디자인 고도화 등 환경개선(H/W)과 특화상품 및 브랜드 개발 등 활성화(S/W)를 지원
- (자율활동 지원) 상인 결속력 강화, 자율상권조합 구성 등 지속운영 가능한 상권(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등)을 위한 준비 일체 지원

[참고] 동네상권발전소 후속사업화 추진체계



4 우수사례 발굴 등 기타

- (우수사례) 공동사업(상권형) 지원 우수사례 발굴(최소 5곳 이상)
- (운영교육) 선정 협업체 대상 사업지침, 운영방법 등 교육(1회 이상)
- (실적보고) 사업 운영·관리, 모니터링 및 성과점검, 사업비 집행현황 등 실적 및 애로사항 등 격주로 보고(월 2회 이상)
- (협약체결) 공단·전문기관·선정 협업체 간 3자 협약체결 관리
- (사업비 교부·관리) 선정 협업체 대상 지원한도 내 사업비 교부*
 - * 지원한도는 공고문[10p] 참고하되, 지원대상의 공동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비 교부·집행·정산 시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필수**
 - (집행관리) 공단에서 선정한 회계법인 활용 협업체의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월1회), 협업체의 불인정·변칙 집행내역 검토 및 보완 요청(상시)
 - (사업비 정산) 선정 협업체의 사업비 집행완료 이후 최종 정산 및 완료 보고서 제출 지원
 - * 회계법인 활용, 사전 정산검증 가능
- (완료점검) 협업체에서 제출한 완료보고서에 대한 현장완료점검 진행
- (전문기관 사업비 정산 등) 공단 제시 「사업비 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비 편성·집행, 완료 후 공단으로 최종 성과품(결과보고 등) 제출
 - * 전문기관별 집행내역은 회계법인 검증을 통해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음
- (사업홍보) 수혜 협업체 모집 홍보로 참여유도 극대화 및 정책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홍보 자율 추진
- (기타 사업지원) 간담회, 운영위원회, 민원대응, 관계자 골목상권 등 현장방문 시 대응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

□ 사업비 집행기준

- 직접비는 총 사업비의 90% 이상으로 편성, 간접비는 아래 항목 중 필요한 항목만 반영하여 총 사업비의 10% 미만으로 편성할 것

구분		사업비 계상 및 집행 기준	
비목	세목		
직 접 비	사 업 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상권형)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목경영패키지 : 4.5억원(10개 내외 지원) * 협업체별 국비 최대 90%, 자부담 10% · 동네상권발전소 등 후속사업화 : 18.5억원(5개 내외 지원) * 협업체별 국비 최대 80%, 자부담 20%
간 접 비	운 영 비	전문기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의 내부기준에 의해 운영비 계상하되, 정부의 「2025년 예산편성지침」을 참고 * 운영비 항목 : 인건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일반 용역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임차료 등

* 협약금액은 선정평가 및 업무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지침의 개정 등에 따라 협약체결 시 사업비 편성·집행기준 일부 변경 가능

** 인건비의 경우, 간접비의 50% 미만으로 편성

나. 신청자격 및 제한요건

□ 신청자격

- (기관요건) 효율적 사업 운영·관리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보유 대학, 공공기관, 민간단체 또는 각 기관간의 컨소시엄 형태
- * 단, 컨소시엄 형태 참여 시 주관기관 및 참여 기관 각각의 역할, 예산 등을 사업 수행계획서에 상세히 기재

구분	세부 모집기준
공공기관/ 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민간기관/ 기업/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기타 법인형 엔젤투자자, 협회·단체, 주식회사(「상법」) 등

- (인력요건) 아래의 전담인력 2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구성

- (사업관리자) 소상공인 지원 경력을 보유하고, 본 사업의 기획·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1인(사업 참여율 50% 이상)
- (실무담당자)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 사업운영 등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1인(사업 참여율 100%)

제한요건 : 접수마감일('25. 3. 4.) 기준, 아래 제한요건(①~⑤)에 해당될 시 신청불가

< 전문기관 제한요건 >

제한요건	세 부 내 용
① 휴 · 폐 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세 금 체 납	· 국세 ·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③ 채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④ 금 융 규 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⑤ 참 여 제 한	·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협약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다. 신청 및 접수

공고기간 : '25. 2. 4.(화), ~ 3. 4.(화), 16:00까지

신청기간 : '25. 2. 11.(화), ~ 3. 4.(화), 16:00까지

* 16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이의신청 불가)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www.sbiz24.kr)

* 소상공인24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 공고문 선택 - 지원신청

** **총괄 사업관리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수행 전문기관이 추가과업 수행사의 제출서류 함께 제출**

신청서류 : 신청기관은 아래의 제출서류(①~⑬)를 구비 하여 신청

*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수행 전문기관 및 추가과업 전문기관 모두 제출

< 신청서류(붙임2 서식 활용) >

제출서류	부수	비고
① [서식1] 사업신청서	1부	-
② [서식2] 수행계획서	1부	-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④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1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본
⑤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1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본
⑥ [서식3]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1부	-
⑦ 참여인력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1부	-
⑧ [서식4]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1부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체 제출
⑨ [서식5] 서약서	1부	-
⑩ 신청자격(기관요건) 충족 증빙 서류	1부	-
⑪ [서식6] 유사사업 수행 실적증명서(선택)	각1부	해당 시
⑫ 추가과업 원가 산정 보고서(선택)	각1부	추가 과업 수행기관 해당
⑬ 발표자료	1부	기관 자체양식(PDF)

라. 평가 및 선정

평가방법

- (평가대상) 공모 참여 기관 중 자격요건 적합 기관
- (평가위원)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 서류 및 발표평가 병행 운영

* 평가위원별 평가 실시 후 최고·최저점 제외 5인 평가점수 산술평균(100점 만점 기준)

** 발표 평가는 신청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진행 예정(변동 가능)

선정방법

- (최종선정) 산술평균 평가점수 80점 이상 득점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1곳의 전문기관 선정(80점 미만인 기관은 선정에서 제외)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우선 선정(사업계획-사업관리-사업개요-사업수행 인력-일반(정량) 順)

< 평가항목 및 배점(안)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이해도 ○ 추진 전략 및 목표 달성 방안 	15
2. 일반(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태, 재무 건전성(기업신용등급평가, 정량평가) 	5
3. 사업수행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인력의 전문성(관련 분야 실무경력 등) ○ 참여 인력 수 및 참여율(투입율) 적정성 	20
4.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협업체 발굴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예산편성의 적정성 	40
5.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전문기관(추가 과업 수행 전문기관 포함)-협업체 간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의 적정성 ○ 과업 진행 간 보고서 제출 및 수시 보고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성과관리의 적정성 	20
합계		100

마.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교부, 정산, 반납, 정보공시 등에 따른 일체 의무이행 필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 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 착오나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관 책임
 - 평가 일정 및 결과는 개별 통지(이메일 등)하며, 신청기관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문기관은 사업비(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전문기관이 별도 부담*
- * 전문기관 사업비 내 편성·집행 불가
- 사업수행 전문기관의 사업 참여 필수인력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담 인력별 사업 참여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③ 산업형

* 전문기관 1곳, 수혜자 지원금액 포함 10억원 지원

가.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대·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을 통한 동·이업종 산업 간 협업 모델실행의 지원으로 성과창출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5. 12월

* 추후 운영 일정에 따라 사업 기간 및 협약완료일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규모 : 1개 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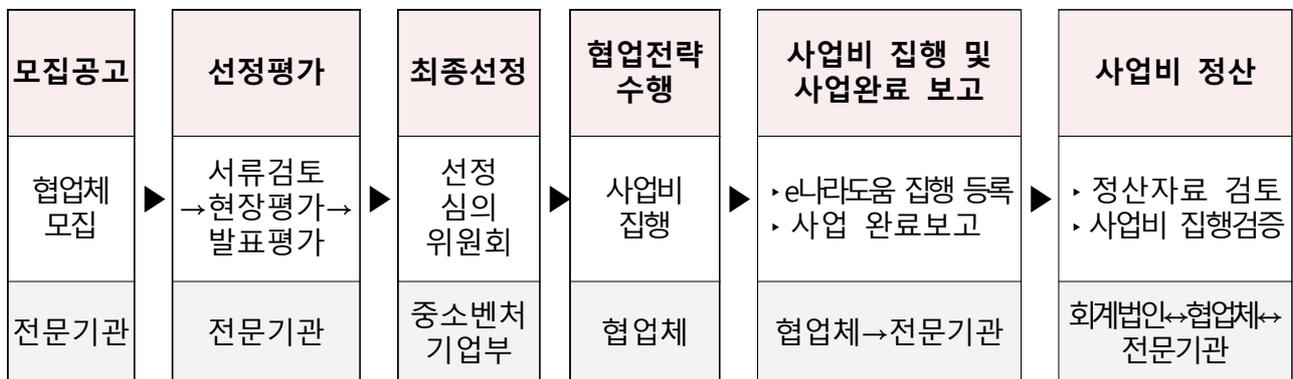
* 단독(사업수행 전문기관) 또는 컨소시엄(선택)으로 진행 가능,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 수행 전문기관(1개 기관) + 추가 과업 전문기관(1개 기관) 신청 가능

□ 지원예산 : 10억원 내외(협업체 지원금액 9억원 내외, 운영비 1억원 내외)

□ 지원내용

- 동종 및 동종+이업종 산업간 협업을 위한 공동사업에 필요한 비용지원
 - 협업아이디어 및 신제품 개발비, 공동장비 임차, 유통채널 확대, 기타 협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산업형) 추진절차 >



□ 주요역할

1 수혜 협업체 발굴

- (발굴) 동종 및 동종+이업종 산업 간 협업 시너지 창출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협업체(소공인, 대·중소기업·소상공인 간 협업 등) 발굴
- 전문기관 보유 채널(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 게재 후 모집 必

<산업형 협업체 유형(예시)>

- ① **소공인 협업체** : 동종 소공인(식료품 2개사) 또는 동·이업종 소공인(가구 제조 2개사+금속 1개사) 간 협업체 구성(5인이상), 공동 마케팅 등 추진
- ② **대·중소기업·소상공인 협업체** : 유통, 물류,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소상공인과 상생협업체를 구성하여 대기업 노하우 등 전파로 경쟁력 강화

2 수혜 협업체 후보 Pool 구축 및 선정심의 운영

- (후보 Pool 구축) 지원규모 1.5배수(8곳)로 수혜 협업체 후보 Pool 구축
- 서류검토→ 현장평가→ 발표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후보 선정
- (선정심의 운영) 수혜 협업체 선정심의위*(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운영
- *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유형별 후보군을 평가, 최종 지원대상 선정

< 공동사업(산업형) 지원대상 모집 및 선정절차 >



3 최종선정 협업체 대상 지원(세부과업)

◆ (지원규모) 협업체당 2억원 한도 80% 이내* 보조(5곳 x 2억원 이내)

* 자부담 20%는 현금·현물(기업의 전문인력 투입, 장비 지원 등) 모두 인정

- (초기 협업지원) 협업 아이디어 개발비, 컨설팅비 등 지원
 - (컨설턴트 매칭) 전문기관 보유 컨설턴트 pool 활용하여 매칭
 - * '선택제(협업체가 컨설턴트를 선택)'와 '추천제(전문기관 추천)' 방식 병행
 - (컨설팅 성과점검) 협업체별 컨설팅 결과 및 과제 이행여부 등
- (협업 실행지원) 동업종 또는 동·이업종 간 협업을 실현 할 공동 장비 임차비, 신제품 개발비 등을 지원
- (협업 확산지원) 대·중소기업 보유 국내·외 유통 채널을 활용한 소상공인 판로 확대 등 전략적 협업 및 수출과정 전반 지원 등
- (기타) 공정개선, 생산관리 등 업종 간 협업에 필요한 비용지원

4 우수사례 발굴 등 기타

- (우수사례) 공동사업(산업형) 지원 우수사례 발굴(최소 2곳 이상)
- (운영교육) 선정 협업체 대상 사업지침, 운영방법 등 교육(1회 이상)
- (실적보고) 사업 운영·관리, 모니터링 및 성과점검, 사업비 집행현황 등 실적 및 애로사항 등 격주로 보고(월 2회 이상)
- (협약체결) 공단·전문기관·선정 협업체 간 3자 협약체결 관리
- (사업비 교부·관리) 선정 협업체 대상 지원한도 내 사업비 교부*
 - * 지원한도는 공고문[18p] 참고하되, 지원대상의 공동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비 교부·집행·정산 시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필수

- (집행관리) 공단에서 선정한 회계법인 활용 협업체의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월1회), 협업체의 불인정·변칙 집행내역 검토 및 보완 요청(상시)
- (사업비 정산) 선정 협업체의 사업비 집행완료 이후 최종 정산 및 완료 보고서 제출 지원

* 회계법인 활용, 협업체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전 정산검증 가능

- (완료점검) 협업체에서 제출한 완료보고서에 대한 현장완료점검 진행
- (전문기관 사업비 정산 등) 공단 제시 「사업비 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비 편성·집행, 완료 후 공단으로 최종 성과품(결과보고 등) 제출
 - * 전문기관별 집행내역은 회계법인 검증을 통해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음
- (사업홍보) 수혜 협업체 모집 홍보로 참여유도 극대화 및 정책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홍보 자율 추진
- (기타 사업지원) 간담회, 운영위원회, 민원대응, 관계자 골목상권 등 현장방문 시 대응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

□ 사업비 집행기준

- 직접비는 총 사업비의 90% 이상으로 편성, 간접비는 아래 항목 중 필요한 항목만 반영하여 총 사업비의 10% 미만으로 편성할 것

구분		사업비 계상 및 집행 기준	
비목	세목		
직 접 비	사 업 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산업형) 지원금	· 산업 간 협업 : 9억원(5개 내외 지원) * 협업체별 국비 최대 80%, 자부담 20%
간 접 비	운 영 비	전문기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 전문기관의 내부기준에 의해 운영비 계상하되, 정부의 「2025년 예산편성지침」을 참고 * 운영비 항목 : 인건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일반 용역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임차료 등

* 협약금액은 선정평가 및 업무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지침의 개정 등에 따라 협약체결 시 사업비 편성·집행기준 일부 변경 가능

** 인건비의 경우, **간접비의 50% 미만**으로 편성

나. 신청자격 및 제한요건

□ 신청자격

- (기관요건) 효율적 사업 운영·관리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보유 대학, 공공기관, 민간단체 또는 각 기관간의 컨소시엄 형태
* 단, 컨소시엄 형태 참여 시 주관기관 및 참여 기관 각각의 역할, 예산 등을 사업 수행계획서에 상세히 기재

구 분	세부 모집기준
공공기관/ 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민간기관/ 기업/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기타 법인형 엔젤투자자, 협회·단체, 주식회사(「상법」) 등

- (인력요건) 아래의 전담인력 2인을 포함하여 **총 3인 이상** 구성
 - (사업관리자) 소상공인 지원 경력을 보유하고, 본 사업의 기획·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1인(사업 참여율 50% 이상)
 - (실무담당자)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 사업운영 등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1인(사업 참여율 100%)

- 제한요건 : 접수마감일(25. 3. 4.) 기준, 아래 제한요건(①~⑤)에 해당될 시 신청불가

< 전문기관 제한요건 >

제한요건	세부내용
① 휴 · 폐 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세 금 체 납	• 국세 ·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③ 채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④ 금 융 규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⑤ 참 여 제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협약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다.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5. 2. 4.(화), ~ 3. 4.(화), 16:00까지

□ 신청기간 : '25. 2. 11.(화), ~ 3. 4.(화), 16:00까지

* 16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이의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www.sbiz24.kr)

* 소상공인24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 공고문 선택 - 지원신청

** **총괄 사업관리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수행 전문기관이 추가과업 수행사의 제출서류 함께 제출**

□ 신청서류 : 신청기관은 아래의 제출서류(①~⑬)를 구비 하여 신청

*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수행 전문기관 및 추가과업 전문기관 모두 제출

< 신청서류(붙임2 서식 활용) >

제출서류	부수	비고
① [서식1] 사업신청서	1부	-
② [서식2] 수행계획서	1부	-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④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1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본
⑤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1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본
⑥ [서식3]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1부	-
⑦ 참여인력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1부	-
⑧ [서식4]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1부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체 제출
⑨ [서식5] 서약서	1부	-
⑩ 신청자격(기관요건) 충족 증빙 서류	1부	-
⑪ [서식6] 유사사업 수행 실적증명서(선택)	각1부	해당 시
⑫ 추가과업 원가 산정 보고서(선택)	각1부	추가 과업 수행기관 해당
⑬ 발표자료	1부	기관 자체양식(PDF)

라.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평가대상) 공모 참여 기관 중 자격요건 적합 기관
- (평가위원)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 서류 및 발표평가 병행 운영

* 평가위원별 평가 실시 후 최고·최저점 제외 5인 평가점수 산술평균(100점 만점 기준)

** 발표 평가는 신청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진행 예정(변동 가능)

□ 선정방법

- (최종선정) 산술평균 평가점수 80점 이상 득점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1곳의 전문기관 선정**(80점 미만인 기관은 선정에서 제외)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우선 선정(사업계획-사업관리-사업개요-사업수행 인력-일반(정량) 順)

< 평가항목 및 배점(안)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이해도 ○ 추진 전략 및 목표 달성 방안 	15
2. 일반(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태, 재무 건전성(기업신용등급평가, 정량평가) 	5
3. 사업수행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인력의 전문성(관련 분야 실무경력 등) ○ 참여 인력 수 및 참여율(투입율) 적정성 	20
4.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협업체 발굴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예산편성의 적정성 	40
5.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전문기관(추가 과업 수행 전문기관 포함)-협업체 간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의 적정성 ○ 과업 진행 간 보고서 제출 및 수시 보고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성과관리의 적정성 	20
합계		100

마.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교부, 정산, 반납, 정보공시 등에 따른 일체 의무이행 필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 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 착오나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관 책임
 - 평가 일정 및 결과는 개별 통지(이메일 등)하며, 신청기관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문기관은 사업비(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전문기관이 별도 부담*
- * 전문기관 사업비 내 편성·집행 불가
- 사업수행 전문기관의 사업 참여 필수인력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담 인력별 사업 참여율은 50% 이상이어야 함